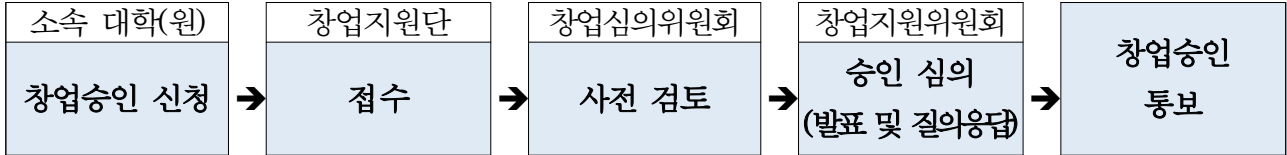


창업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안내

□ 창업 승인 신청 관련 사항

○ (창업심의절차) 창업지원단 등에서 사전 검토 후 창업지원위원회 승인 심의



※ 창업 기업 설립 전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

○ (신청 자격) 본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기금교원

- 부교수 이상 또는 본교 3년 이상 근속 교원
- 3년 미만 근속 교원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 - ①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
 - ②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③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○ (신청 유형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으로, 다음 아래 경우 포함

- (유형 가)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(대표이사, 등기된 사내 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 포함)에 취임하는 경우 ※ 규정 제2조 제1호 가목, 시행세칙 제3조 제1항
- (유형 나)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(지분 포함)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※ 규정 제2조 제1호 나목, 시행세칙 제3조 제2항
- (유형 다)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총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※ 규정 제2조 제1호 다목, 시행세칙 제3조 제3항

○ (주식 출연)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교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%에 해당하는 주식(1억원을 한도로 5%에 달할때까지로 함)을 출연해야 함

※ 세부사항 규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5조 참조

※ 창업 승인 신청 시 붙임 2 「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」 참고

□ 제출 서류

1. 창업 승인 신청 공문 (공문에 창업 신청 유형* 반드시 기재)

* 아래 유형 중 선택하여 기재하되, 신청 유형이 다수인 경우 전부 기재

- ㉠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
- ㉡ 창업기업의 주식 20% 이상 소유하는 경우
- ㉢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

2. 공문 첨부 서류 ([붙임 3] 서식, 원본 창업지원단(32-1동 2층)에 제출)

1) 창업 승인 신청서(창업 사업계획서 포함)

2) 확약서 (※ 창업 신청 '유형 나' (창업기업의 주식 20% 이상 소유하는 경우)에 단독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[별표 2] 확약서 제출, 그 외 [별표 1] 확약서 제출)

※ 본교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창업하여 위 창업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교원 모두 창업 승인 신청 서류 제출 필요

- (예시) A, B, C, D 교원이 '가' 회사를 창업하여 A 교원은 창업기업의 대표 이사, B 교원은 창업기업의 임원, C 교원은 창업기업의 주식 20% 이상 소유하는 경우, D 교원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, A~D 교원 모두 창업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각 창업교원이 주식 5%에 대한 연대 출연

□ 심의 관련 사항

○ 창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교원이 창업 계획 및 질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므로 (약 5~10분), PPT 등을 활용하여 발표자료 준비 필요

- 신청 유형 중 '유형 가' (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)에 해당
※ '유형 나' (창업기업의 주식 20% 이상 소유하는 경우), '유형 다' (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)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위원회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사업계획의 기술성, 타당성, 사업성 및 성장성,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에 따라 창업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'승인', '조건부승인', '불승인' 으로 평가함(평가기준 별첨)

○ 창업지원위원회 참석 및 발표자료 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

□ 보완 절차

- 사전 검토 과정에서 신청서류 및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, 이에 교원이 신청한 차수의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※ 창업 승인 신청 후 승인통보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, 창업 예정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고
- 사전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성, 기술성, 사업계획서 보완 예정

□ 창업 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

※ 위원회 심의자료이므로 누락 없이 상세히 작성 요망

○ 창업 승인 신청서

- 신청자 직급 및 임용일자 반드시 기재, 그 외 창업(예정)회사 관련 내용 중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‘미정’으로 기재
- 소속 대학(원)장 직인 날인
- (창업기간 추진계획)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1) 직무발명 신고, 기술이전 계획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, 2) 연구실과 창업기업과의 분리 방안, 3) 교육 및 연구의 누수 방지 방안, 학생·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관리 방안 4) 창업기업으로서의 학교 자산 장비 사용 시 장비소관 기관(부서)로의 사용료 납부 및 관리 방안 반드시 작성

○ 창업 사업계획서

- (창업계획 요지) 창업 사업계획서 전체를 요약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
- (1. 창업자 인적사항) 창업기업의 대표자 인적사항 작성
 - ※ 창업 신청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, 대표자와 함께 신청 교원의 인적사항 추가 작성
 - ※ 대표자 2인 이상의 공동창업 건은 공동 대표자의 인적사항 모두 작성
- (1. 창업자 인적사항 -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) 창업 대표자와 관련 있는 대표 연구과제를 적고 창업기업과 연관될 경우 비고란에 ‘창업 기술 관련 연구’ 기재
- (2.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-인력 현황) 신청자를 포함한 창업 기업의 경영진 및 기술진 작성

- (2.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 - 설비현황) 학교 기자재 활용 시 장비명 뒤에 ‘(학교 자산)’ 추가 기재
 - ※ 학교 연구 장비를 창업기업에 활용할 경우 장비 사용에 대한 비용 납부 필요
 - (3. 기술개발 사업계획) 창업 관련 특허 내용 상세 기재(출원일자, 대표발명자, 기술이전 이력 등),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특허명 및 기술이전 계획 상세 기재
 - * 「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출원(예정)·등록 특허 활용 전 예비 출원 절차에 대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실과 사전 협의 필요(창업 심의 시 ‘창업기술의 적격성’ 을 검토함에 따라 발명(예정) 기술을 대학에 특허·노하우 형태로 출원·등록 필요)
 - (3. 기술개발 사업계획 - 투자유치계획)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참여 계획, TIPS 투자 유치 관련 사항, 외부투자자 참여 여부, 지분 관계 등 작성
 - (4. 시장 현황) 국내 및 세계 시장 현황 규모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기재, 주요 수요처, 경쟁업체 현황, 판매전략, 판매계획 작성
 - (5. 향후 추진계획-향후 추진일정 계획)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참여 계획, 기술이전 계획, 학교 재정기여 계획 등
 - (5. 향후 추진계획-소요자금 및 조달계획) 창업기업의 참여 인력 간 자본금 출자구조 및 지분구조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- **확약서:** 창업유형에 맞는 확약서를 선택하여 작성

□ 유의사항

- **학교 자원을 활용한 창업 시 유의사항**
 - (학생·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)
 -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, 창업 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**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·4대보험 가입 필요**
 - 서울대학교와 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**총장 발령 연구원**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되므로 창업기업 참여 불가
 - 학내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·연구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 외 창업소득은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 (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☎ 02-880-5587)
 - * 학내 소속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속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 확인

〈가능 사례〉

- 총장 발령 연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자체발령 연구원인 경우 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사전 동의가 필요
- 총장 발령 연구원 중 객원연구원(외부 겸직 가능)

〈금지 사례〉

- 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연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논문지도를 이유로 학생의 요청 없이 창업기업 연구업무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급여 미지급
- 창업기업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등의 고용 절차를 누락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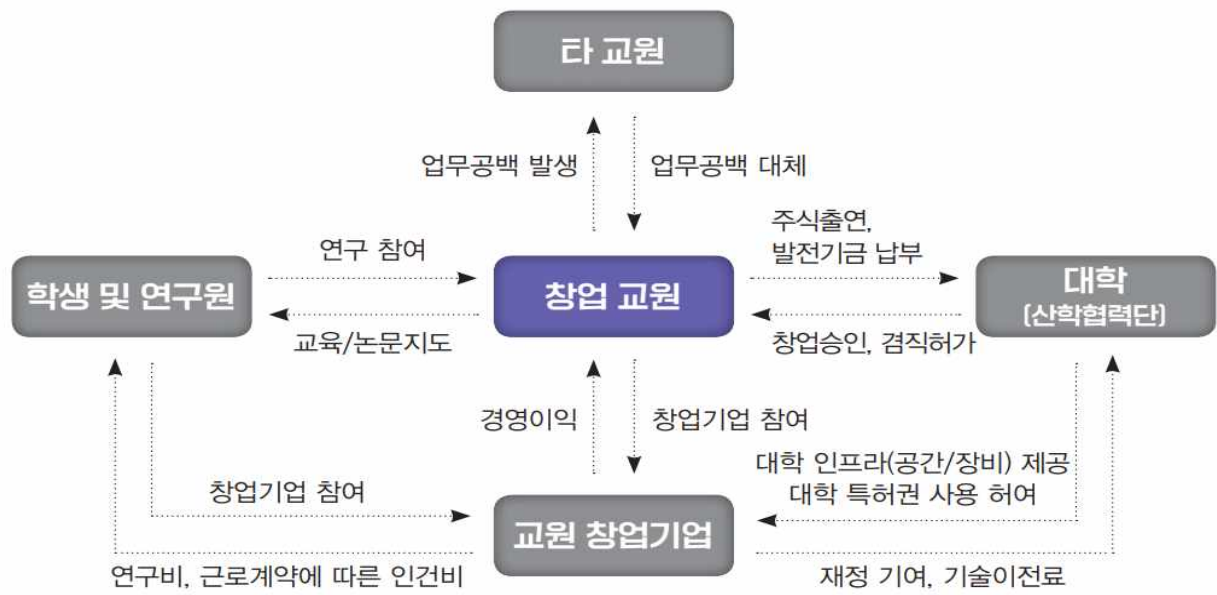
- (연구장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) 학교 소유 연구장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창업에 활용 시 기관별 기준에 따른 비용 납부 필요
- (공간) 교수 연구실 등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창업 승인 후 공간 임대차 계약 체결 필요
- (특허 등 지식재산권) 본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은 SRnD 통해 직무발명 신고해야 하며, 창업기업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요

※ 직무발명

-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‘교직원 등’ 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,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 부처와 그 출연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
-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며, 제3차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임
- [붙임2-2]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가이드 참고

○ 기타 유의사항

- (겸직) 교수 1인당 사외이사 등을 포함해 2개 회사에 한함
- 창업기업의 변경(기업명, 대표자, 주요 사업 내용 등) 사항 발생 시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함
- 교원 창업 시 학생 및 연구원, 대학, 창업기업 등 주변 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 가능하여 대학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작성 요령 등을 준수해야 함



- 원스톱 창업상담창구(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)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이 가능하며 필요 시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신청

[별첨] 교원 창업 심의 기준

평가기준	검토항목
승인	<p>(기술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순 개업¹⁾이 아닌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한 창업(Venture, Startup) • 창업 기술이 특허나 노하우로 확보할 수 있는(또는 완료된) 연구결과물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음 <p>(타당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뚜렷하고, 창업자의 연구 경력 등이 창업 업종과 부합함 • 창업자가 대학이 보유한 인력 및 인프라 활용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음 • 본교에 대한 기여 방안이 구체적임 <p>(사업성 및 성장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자가 사업계획, 인력수급 계획,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, 설비투자 계획, 수요처, 경쟁업체 현황, 판매전략, 법적문제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성, 성장성이 있음 •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높고 향후 국가적,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<p>(기타 고려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의 작성, 발표, 질의응답의 충실성 • 타당성, 기술성, 사업성, 성장성 이외에 심의 시 고려할 항목 <p>※ 1) 단순 개업: ① 교원의 전공,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창업 ② 교원의 전공,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관련 있으나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·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창업*, 기술실용화(산업화)로 보기 어려운 창업, 시장에 일반화 되어있는 사업 또는 시장 차별화가 낮은 창업</p> <p>* 교육, 컨설팅, 자문업, 전문자격을 활용한 창업, 용역사업 수행이 추가 되는 창업 등</p>
조건부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의 타당성, 기술성 및 사업성, 시장성, 기타 창업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<p>※ 심의 결과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창업지원위원회 재심의 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창업을 진행할 수 있음</p>
불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 기반 창업이 아니거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지 않는 창업 • 사업계획의 타당성, 기술성 및 사업성, 시장성 등에 있어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• 사업계획이 대학의 연구개발과제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